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1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5. 19.
판 결 선 고	2016.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7,863,620원의 부과처분과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13,637,100원 및 지방교육세 20,848,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4. 피고에게 [redacted]구 A 6,4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았고, 2014. 5. 28. 피고에게 등록세 등을 감면신청하여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2014. 7.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 4,696,136,940원에 대하여 취득세 117,863,62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113,637,1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0,848,95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8. [redacted]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3. 기각되었고, 2015.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6, 을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가 2010. 11. 30. 예정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조성공사가 지체되어 2014. 3. 31. 비로소 준공되어 공장건축이 가능하였고, [redacted]광역시 도시개발공사도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원고에게 505,077,813원을 선수금 이자 명목으로 환급하였으며, 매매면적 및 매매대금이 변경되어 2014. 5. 28. [redacted]광역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도시개발공사와 정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2014. 5. 28.이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 후단은 '산업단지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끝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준공인가가 있었던 2014. 3. 31.이 감면유예의 기산일이다.

(3) 원고는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고 바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2010. 11. 30.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정비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에도 토목공사가 중단되었다 진행되기를 반복하였으며, 2012년경까지 오수관 설치공사와 전기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공장건축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8. 10. [redacted]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redacted]구 A 6,4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839,114,000원에 매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지구 : [redacted] B산업단지

대상토지의 표시

소재지	가지번	지정용도	지목	면적(㎡)	비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C	A	산업시설용지	장	6,149	토지사용가능(예정)시기 2011. 10. 31.

위 표시의 토지등(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redacted]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주식회사 [redacted](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① 갑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매각하여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 금 사십팔억삼천삼백일십일만사천원정(₩4,833,114,000)					
대금납부방법					
구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	할부이자	납부할 금액	미납잔대금
계약보증금	2010. 8. 10.	₩483,311,400	₩0	₩483,311,400	₩4,349,802,600
1회 할부금	2010. 11. 10.	₩869,960,520	₩0	₩869,960,520	₩3,479,842,080
2회 할부금	2011. 2. 10.	₩869,960,520	₩0	₩869,960,520	₩2,609,881,560
3회 할부금	2011. 5. 10.	₩869,960,520	₩0	₩869,960,520	₩1,739,921,040
4회 할부금	2011. 8. 10.	₩869,960,520	₩0	₩869,960,520	₩869,960,520
5회 할부금	2011. 10. 31.	₩869,960,520	₩0	₩869,960,520	₩0
납입계좌	신한은행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① 을은 대상토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이 대상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갑은 매매대금을 완납 전이라도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제4조(면적기준 및 정산)

① 대상토지의 면적은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 발생시 확정된 면적에 따라 공급단가로 정산하되, 정산 공급단가가 B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우선순위 1·2순위 정산 공급단가보다 낮을 경우 1·2순위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② 을이 납부한 과부족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조성사업 완료 후 정산시 정산금액에서 가감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납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구분	약정일	약정금액	입금일	원금	할인액	입금액
계약보증금	2010.8.10.	483,311,400	2010.7.14.	10,000,000		10,000,000
			2010.8.10.	473,311,400		473,311,400
중도금1	2010.11.10.	869,960,520	2010.11.10.	869,960,520		869,960,520
중도금2	2011.2.10.	869,960,520	2010.11.30.	869,960,520	12,012,600	857,947,920
중도금3	2011.5.10.	869,960,520	2010.11.30.	869,960,520	26,861,520	843,099,000
중도금4	2011.8.10.	869,960,520	2010.11.30.	869,960,520	42,210,960	827,749,560
잔금	2011.10.31.	869,960,520	2010.11.30.	869,960,520	55,891,980	814,068,540
계		4,833,114,000		4,833,114,000	136,977,060	4,696,136,940

(3) B산업단지 개발사업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예상면적은 6,149㎡였는데, 확정면적은 6,144.6㎡이고, 예정금액은 4,833,114,000원이었으나, 확정금액은 4,913,166,850원이며, 완납일은 2010. 11. 30.이다.

(4)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지번은 [redacted]구 D인바,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E의 소유자는 2012. 3. 31. 건축물을 착공하여 2012. 9. 18. 사용승인을 받았고, F의 소유자는 2012. 5. 14. 건축물을 착공하여 2012. 9.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2015. 4. 30. G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6, 을4~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령

별기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에 관하여

㈎ 관련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참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의 지급 후 면적 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 참조).

㈏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조성공사가 일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을5, 을6의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E 토지에는 2012. 3. 31. 건축물이 착공되어 2012. 9. 18. 사용승인을 받았고, F 토지에는 2012. 5. 14. 건축물이 착공되어 2012. 9. 27.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2010. 11.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 발생시 확정된 면적에 따라 공급단가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확정면적은 예상면적에 비하여 4.4㎡가 감소하였으며, 대금은 약 8,0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정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을 위 법리에 적용하여 보면, 비록 추후 정산 약정에 따라 일부 면적과 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매매대금이 모두 완납된 2010. 11. 30.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원고 스스로도 계약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2) 3년의 기산시점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 따르면 2011. 1. 1. 개정된 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인 2010. 11. 30.로 보는 이상, 이 사건에는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에 따를 경우 원고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을 근거로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3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법령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조항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조항은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다(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5항은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취득일'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취득일'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갑4, 을5, 을6의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E지상의 건축물은 2012. 3. 31. 착공되어 2012. 9. 18. 사용승인을 받았고, F 지상의 건축물은 2012. 5. 14. 착공되어 2012. 9.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조세심판원에 불복절차 중인 2015. 4. 30.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원고 자체의 자금사정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③ 갑4의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인 [redacted]공사가 선수금이자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감액하여 준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 그 감액경위가 분명하지 않고(매매계약상 약정할부금보다 먼저 선입금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할인해준 금액도 포함되었다 볼 여지가 있다), 달리 앞서 본 취득일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법령상·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홍윤하

판사 심우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부칙(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02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득의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무상승계취득을 하거나 유상승계취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